

## 1. 개정이유

농지를 담보로 지급받는 농지연금의 실질적 수급권 보장을 위해 농지연금 전용계좌를 개설하고, 전용계좌의 예금 채권을 압류할 수 없도록 하는 「한국농어촌공사법 및 농지관리기금법」이 개정(법률 제16792호, 2019. 12. 10. 공포, 2020. 7. 1. 시행) 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

## 2. 주요내용

- 농지연금 압류방지전용계좌 입금 금액,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운영 세부 사항을 규정(안 제19조의15 및 제19조의16 신설)
- 농지연금 압류방지전용계좌의 입금 금액을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제2조에서 정하는 금액(압류금지 생계비 185만원)이하로 정함.
- 정보통신장애나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현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.
- 기타 전용계좌 신청 시 제출 서류,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

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0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의15 및 제19조의1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9조의15(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입금 금액)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.

제19조의16(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(이하 “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”라 한다)로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 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, 예금통장(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)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

②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이 경우 공사는 농지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1. 농지연금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2. 농지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,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

## 부 칙

이 영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19조의15(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입금 금액)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”이란 「민사집행법 시행령」 제2조 본문에서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.</u>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<p><u>&lt;신 설&gt;</u></p> | <p><u>제19조의16(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신청방법 및 절차) ① 법 제24조의6제1항 본문에 따라 농지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(이하 “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”라 한다)로 받으려는 사람은 농지연금 지원약정 체결 시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고, 예금통장(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) 사본을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.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.</u></p> <p><u>② 공사는 법 제24조의6제1항 단서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”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</u></p> |

이 경우 공사는 농지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.

1. 농지연금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

2. 농지연금수급자가 농지연금수급전용계좌를 개설한 금융기관이 폐업,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정상영업이 불가능하거나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